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의무화 등〉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9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형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5. 12. 8.
3. 회 부 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하여금 2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u>양성</u>) ① (생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u>전문강사</u> 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u>양성</u> <u>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문강사(이하 “통일교육 전문강사”라 한다)</u> ----- -----. ③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전문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자격을 받은 경우</u>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u>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u> ⑤ -----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항·제3항-----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교육 주기 등 구체적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1)(통일부훈령)」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2년마다 국립평화민주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5년 9월말까지 총 852명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신규 양성하였고, 이 중 총 847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해당 수치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재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중복하여 집계한 결과로, 실제로는 신규 양성된 전문강사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단 한 차례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1)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 이는 전문강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 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수단이 현행 법령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강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재교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견인하고 그간 미흡했던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사 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먼저, 개정안은 제9조의2제2항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제9조의2제1항²⁾에서 ‘통일교육 전문강

2)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

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로 약칭을 사용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본칙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재교육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교육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전문강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본칙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통일부는 재교육 미이수자에게 자격정지 등의 제재 근거가 되는 의무부과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되, 재교육 주기는 정책환경, 재교육 여건 등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재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규정이 도입되어도 기존의 재교육 미이수 통일교육 전문강사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에 관련 경과규정³⁾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통일부 제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268